

노숙인 의료지원

건강에 취약한 상태인 노숙인에 대해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로 건강증진과 자활의지 제공

예산총괄

(단위 : 천원)

2014최종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	(B-A)*100/A
4,633,954	4,364,087	△269,867	△5.8%

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노숙인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통한 자활의지 제공
 - 의료급여 노숙인 : 국민건강보험 체계 편입 보호
 - 의료급여 제외 노숙인 : 서울시 노숙인 의료보호시스템으로 보호

사업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
추진경위

- 2000. 2. : 노숙인 의료구호 개선방안(보건복지부)
- 2011. 6. 7.
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시행 : 2012.6.8.)
 - 의료급여법 개정(노숙인의료급여1종 신설) (시행 : 2012.6.8.)
- 2012. 8. :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 전수조사(전체 노숙인의 약 10%)
<노숙인의료급여1종 수급조건>
 - ① 노숙인 시설에 입소자 중 노숙생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 확인자
 -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
 - ③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→ 2014년부터 폐지
- 2014. 1. : 노숙인의료급여1종 수급조건 중 ③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(폐지)

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거리 및 시설노숙인
- 사업내용
 - 노숙인 진료시설 진료비 지원
 - 무료진료소 운영(2개소) 및 결핵검진(연 2회) 지원
- '15년도 소요예산 : 4,364,087천원(시비 100%)

□ 2015년도 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4,289,037	4,633,954	4,364,087	△269,867
사무관리비	-	100,000	-	△100,000
서울역무료진료소 임차비	-	100,000	-	△100,000
의료 및 구료비	3,619,048	3,840,000	3,649,767	△190,233
노숙인 진료비	3,619,048	3,840,000	3,649,767	△190,233
사회복지보조	669,988	693,954	714,320	20,366
의료지원 프로그램	669,988	692,687	714,320	21,633
처우개선비	-	1,267	-	△1,267

□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■ 노숙인 진료비 지원 : 3,649,767천원

· 3,840,000천원/'14년 + 84,480천원(2.2% 추가인상) -274,713천원 (의료급여 책정으로 0.07% 감소)

■ 노숙인 의료지원 프로그램 : 714,320천원

· 인건비 : 340,810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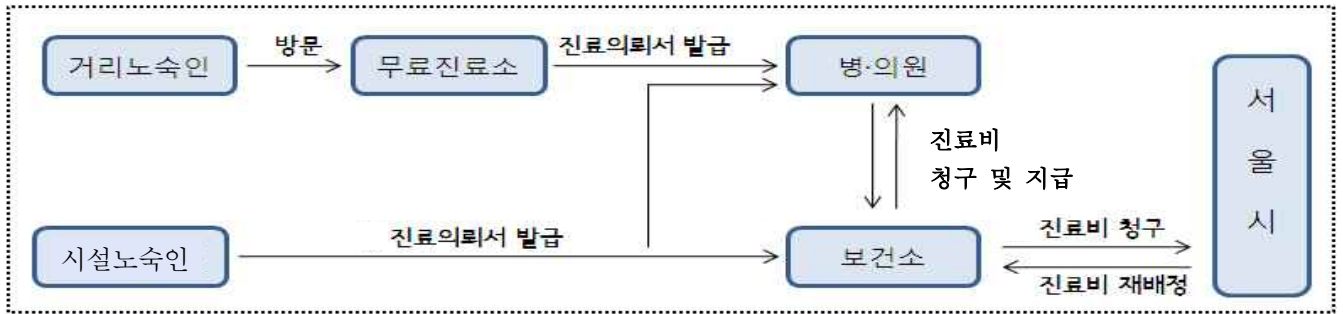
- ▶ 서울역(5명) <194,377천원/'14년> + 6,531천원(3.36%) = 200,908천원
- ▶ 보현의집(4명) <124,800천원/'14년> + 4,193천원(3.36%) = 128,993천원
- ▶ 공중보건의 장려금(2명) <200천원/월* 2인 * 12개월> * 2개소 = 9,600천원
- ▶ 처우개선비(2개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의)1,267천원/'14년 + 42천원(3.36%) : 1,309천원

· 무료진료소 운영(영등포보현의집, 서울역무료진료소) : 373,510천원

- ▶ 진료활동 장려금(공중보건의) <800천원/월 * 2인 * 12개월> * 2개소 = 38,400천원
- ▶ 의료용품 구입비 <700천원/월*12개월> * 2개소 = 16,800천원
- ▶ 시설운영비 : 21,000천원
 - 서울역무료진료소 <1,200천원/월 * 12개월> = 14,400천원
 - 보현의집무료진료소<550천원/월 * 12개월> = 6,600천원
- ▶ 차량유지비
 - <600천원/월 * 12개월> * 2개소 = 14,400천원
- ▶ 약품구입비 : 170,510천원
 - 서울역 <11,645천원/월* 12개월> = 139,740천원
 - 보현의집<2,564천원/월 * 12개월> = 30,770천원
- ▶ 결핵 및 요양환자 관리비
 - 서울역 <7,700천원/월 * 12개월> = 92,400천원
- ▶ 결핵검진(년2회) : 20,000천원

□ 사업추진 절차

- 진료시설 진료비 지원



- 무료진료소 운영비 등 지원

- 분기별 보조금 신청(시←자치구 ← 무료진료소) → 분기별 보조금 자치구 재배정 → 보조금 교부(보조금 대상시설 ← 자치구) → 정산·보고(시 ← 자치구 ← 보조금 집행시설)

□ 사업효과

-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

2012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 (39,409건) · 무료진료소 이용(건강검진, 진료, 투약, 병원의뢰, 결핵검진 등) (38,587건)
2013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 (39,853건) · 무료진료소 이용(건강검진, 진료, 투약, 병원의뢰, 결핵검진 등) (40,665건)
2014년도 (예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 (40,000건) · 무료진료소 이용(건강검진, 진료, 투약, 병원의뢰, 결핵검진 등) (41,000건)

- 향후 기대효과

- 노숙인들의 질병예방 및 치료 지속 추진으로 자활기반 동기부여
- 특히 결핵 및 독감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예방 및 치료 도모

□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- 추진방향

- 무료진료소 기능제고를 통한 2차 의료기관 이용율 축소
-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

-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총 계		4,364,087	
의료지원 기본계획 수립	2015. 1.	-	
진료비 및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신청 및 집행	2015.1 ~ 12	4,364,087	분기별 신청 및 교부집행
집행정산	2015.12 ~ 2016.2		

집행결과

최근 3년간 이·전용, 이용·불용 실적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 (A)	전년이월 (B)	이·전용 (C)	예산현액 (A+B+C)	집행	차년이월 (명사·사고)	불용
2011	6,020,854	-	△52,000	5,968,854	5,237,425	-	731,429
2012	6,161,000	-	-	6,161,000	4,899,396	-	1,261,604
2013	4,589,578	-	-	4,589,578	4,289,037	-	300,541

※ 2011 예산전용 : 영등포지역 쪽방촌 공동화장실 설치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복지건강본부	자활지원과	재활시설팀장	홍춘식 (2133-7492)	주무관	권상준 (2133-7493)